

신문법과 방송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언론의 책임

고 창 실

제주중재부 중재위원,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강사

1. 들어가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든가 혹은 정부 없는 신문이든가, 그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하고 결단을 촉구한다면, 나는 일순의 지체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고 하여 언론자유를 중요성을 피력했다.

근대 민주주의 발달의 기초가 된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프랑스의 인권선언 모두 고루,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자유를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시초는 신체와 언론자유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언론과 언론자유는 취재·보도·접근권의 범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구축, 제4부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큰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주적인 여론 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선도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의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언론이 음란·퇴폐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문이나 방송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엽기적인 범죄 사실이나 성폭력 범죄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거나, 외설적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거나 청소년의 선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신문의 연재소설만 하더라도 소설 속 두 주인공의 변태적 성행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물론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얼마든지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것이 책으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란·퇴폐의 내용이 담긴 작품이 신문에 연재되는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영화도 마찬가지다. 선정성이 있는 영화 자체를 타하는 것이 아니다. 선정성이 있는 영화가 TV로 방영될 경우, 자칫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등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작품이 지닌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방송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은 건전한 가

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음란·퇴폐 또는 폭력성이 다분히 담긴 소설 또는 영화 등을 신문에 연재하거나 방송 등을 통해 상영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신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앞서 언론이 스스로의 의무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3. 방송이 표준말의 보급 등 공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TV를 하루도 보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공공장소마다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TV 시청은 우리의 일상생활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 등장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20대 딸과 어머니의 대화를 화면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하면 모녀간의 대화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마치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으로 들린다. 근래 방영되는 TV 드라마의 대화 중에 20대 딸이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어머니에게 반말을 한다. 그뿐만 아니다. 젊은 부부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남편을 '자기'라고 표현하더니만 근래는 '오빠'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들으면 부부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젊은 남매 간의 대화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다. 오빠는 순위 오라버니인데 젊은 누이가 오라버니를 부둥켜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남편이 오빠일 수 있는가. 어느 순간에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 '아빠'에서 '자기'로, 또 '오빠'로 불리고 있다.

물론 당연히 해당 드라마는 작품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드라마가 영화관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 드라마를 방영하는 TV가 공영방송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영방송이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며 언어순화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송법을 지키지 않고 표준말 보급을 방해하며 언어순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신문이나 방송의 중대한 임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또한 보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이나 TV 영화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정서적으로 미성숙 상태인 청소년 등에게 전달될 위험이 상존한다. 소설책이나 극장 영화에서 보여지고 전달되는 것과 가정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가정에 배달된 신문이나 방송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어서 '건전한 가정 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법의 규정을 신문이나 방송이 지켜야만 한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족문화 창달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